

‘전기차충전서비스 특구사업자 책임보험료 지원’ 공고

제주테크노파크에서는 규제특례 적용 제품 활성화를 통한 지역 신기술·혁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2차 제주특구(전기차충전서비스) 안착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사업자 책임보험료 지원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9일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차 제주 특구(전기차충전서비스) 사업자 책임보험료 지원
- 사업기간 : 2024. 04. 01 ~ 2024. 12. 31(9개월)
- 지원예산 : 금33,000천원
- 지원대상 : 2차 제주 특구(전기차충전서비스) 사업자 12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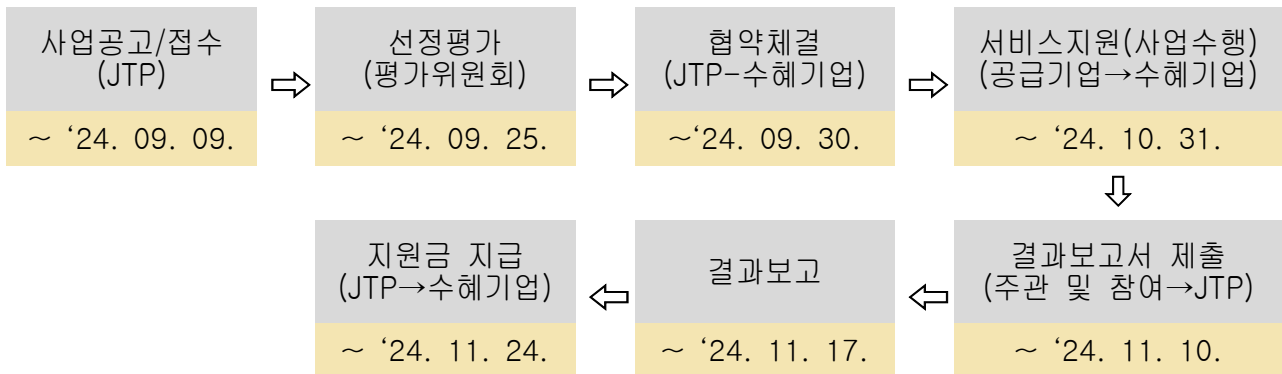
구 분	실증R&D사업명(세부과제명)	수행기업(특구사업자)	비 고
1세부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실증	SK시그넷, (주)지니	2개사
2세부	점유 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 서비스 실증	(주)에바, (주)민테크 (주)타디스테크놀로지	3개사
3세부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	(주)차지인, (주)비에프랩스 메티스정보(주), (주)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4개사
4세부	충전 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 실증	전기차평가연구소(주), (주)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주)퀀텀솔루션	3개사

- 지원규모 : 금33,000천원
 - 모든 부가가치세(VAT)는 기업 부담이며, 민간부담금과 함께 지원금 신청 이전에 납부
 - 기업별 지원 규모는 과제별 신청 현황 및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현재 기준으로 책임보험이 가입된 경우, 2024. 04. 01부터 소금 적용하여 사업비 지급
 - 각 기업별 책임보험료 가입 금액이 다르므로 기업별 최대 금액 제한을 두지 않으나, 총 사업비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최대 신청 기업에서 지원 금액 조정하여 지원

○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비 고
책임보험료 지원	- 특례와 관련된 사업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보험료 지원 ※ 지역특구법 제88조,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범위와 보장 금액으로 가입 - 가입기간 : 2024. 04. 01 ~ 2024. 12. 31	건당 가입비용의 90% 이내

□ 사업 추진 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과 절차는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서면평가

- 서류평가 : 제출된 계획서 및 서류 기반의 사전 검토(사업담당부서 진행)
- 선정 평가위원회 :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

○ 평가항목

- 서류평가 : 참여인력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사업비 지원 신청금액 및 자기부담 비율의 적정성, 사업 참여를 위한 필요 서류 제출 여부, 가산점 적용 대상 여부, 선정평가 제외 대상 여부 등 평가
- 선정평가 : 지원의 필요성, 책임보험의 적절성, 기대효과 등 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점수
지원의 필요성	책임보험료 지원의 필요성	20	
책임보험의 적절성	가입 보험의 적절성 (계약 내용, 기간, 보험금액)	30	
	실증 제품 안전성 및 이용자 안전 확보 방안의 적절성	30	
기대효과	실증 제품에 의한 경제·사회적 효과 등	20	
합 계		100	

□ 선정기준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동일 점수일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 산술 평균점으로 하나, 평가위원이 5인 이하일 경우는 최고·최저 점수를 포함한 종합 산술평균점으로 평가점수 산정
- 최종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하고, 60점 미만은 지원 제외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 09. 09(월) ~ 2024. 09. 20(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제주산업정보서비스 : <http://jeis.or.kr>) 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 (재)제주테크노파크 [제주산업정보서비스\(http://jeis.or.kr\)](http://jeis.or.kr) 접속
- 신청기업 대표자(또는 과제책임자) ID/Pass Word로 로그인 (**필요시 회원가입**)
- 상단 좌측메뉴에서 ‘지원사업’ ⇨ ‘해당사업(접수중)’ 클릭 ⇨ ‘사업신청’ 클릭
- 상세화면으로 이동 ⇨ 각 항목 입력/저장 ⇨ 제출서류 업로드 ⇨ ‘등록’ 클릭

- 제출서류 : 기한 내 신청기업이 온라인(<http://jeis.or.kr>) 업로드 필수

No	제출서류	비고
1	신청서	[별첨1]
2	책임보험 프로그램 계획서	[별첨2]
3	보험증권 또는 보험 견적서	발행기관 직인 날인 必
4	사업자등록증 사본	온라인제출
5	중소기업확인서	1부

- * 지원대상이 확정된 사업임에 따라 제출서류를 간소화함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각 제출 서류는 하나의 PDF 파일로 합쳐서 별첨 순서에 따라 첨부하여 제출

○ 문의처

- 지원사업 관련 문의 : 에너지센터 그린에너지팀 진호경 책임연구원
 - 064)720-3724, jhk3839@jejutp.or.kr
- 온라인(<http://jeis.or.kr>) 관련 문의 : 기업지원단 지역산업정보화팀 이태호 연구원
 - 064)-720-3066, ethc@jejutp.or.kr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평가일정과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함 (※ 제주산업정보서비스 활용)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규정을 적용함(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름)
 - (재)제주테크노파크 ‘사업관리 요령’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나 동일한 내용으로 타사업 또는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 해지, 지원금 회수,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수혜기업은 협약종료 후 성과관리(매출, 수출, 고용 등)를 위한 증빙자료에 대한 제출 협조 의무가 있으며 해당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불가함

【참고1】 제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 제외대상

【제주테크노파크 사업관리 지침】 제10조(선정평가 제외 대상)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선정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사전검토 결과 사업 신청자격요건 및 기타 신청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1.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 불이행 2. 사업참여 신청자가 재단의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임대료, 관리비, 장비 시설 이용료 및 지원사업 관련 민간 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단, 사업공고 마감일까지 납부 완료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② 「지역산업지원사업 공동운영요령」 및 「지역산업지원사업평가관리지침」,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③ 사업 참여 신청자의 경영상태가 접수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3호의 경우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은 예외로 함) 1.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법정관리·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개인 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 면책권자 포함) 3. 최근 3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기업(다만,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가. 지원금을 후지급 및 공급기업(관)으로 지급하는 직접지원을 받는 기업(사업완료 후 제주테크노파크가 사업 결과물을 먼저 수령하고 지원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직접지원사업과 지원금을 수혜기업에게 지급하지 않고 공급기업(관)에게 지급하는 직접지원사업) 나. 간접지원을 받는 기업(제주테크노파크 주관으로 홍보물 제작, 공동박람회 지원, 컨설팅 지원등) 4.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기타】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과제관리’ 제재정보 조회에서 확인 가능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달할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② 타 기업지원기관과 동일 사업 아이템으로 동일 지출항목 중복 수혜한 경우 ※ 적발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조치 추진